KATHY HOCHUL 주지사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CEO

귀하의 권리에 알아야할 사항: 주 기금 주택 공급 신청자들을 위한 뉴욕주 신용 정책

주택 공급 제공사/임대주는 귀하의 신용 점수 또는 이력에만 기초해 귀하의 주 기금 임대 주택 신청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신용 점수가 낮거나 부정적 신용 이력이 있는 경우, 귀하에겐 그러한 사항을 설명 또는 반박할 추가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정책의 내용

- 귀하는지난 12개월 또는 COVID-19 팬데믹 이전(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u>또는</u> 이전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전액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신용 조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 또는 신용 이력을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 o 귀하의 FICO 신용 점수가 580점 이상인 경우(또는 노숙자일 경우 500점),
 - o 귀하가 제한적 또는 존재하지 않는 신용 이력을 지닌 경우,
 - o 임차료보조금으로귀하의 임차료전액을지불하는경우,
 - 귀하의 신용 점수 또는 신용 이력이 여성폭력방지법(VAWA)에서 다루는 범죄(가정폭력, 스토킹 또는 괴롭힘 등)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또는
 - 귀하에게 파산 또는 미해결 채무 이력이 있으나,지난 12개월 동안 또는 COVID-19 팬데믹(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전 12개월 동안 정시에 임차료를 지급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 귀하는 다음을 근거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 o 의료부채 또는 학자금부채.

○ \$5,000 미만의 미지급 채무.

o 1년 이상 전에 발생한 파산.

- o 퇴거 또는 주택법원 과거 이력.
- o 임차 또는 신용 이력이 제한적이거나 없음.
- o 뉴욕주 COVID-19 비상 사태(2020년 3월 7일 2021년 6월 23일) 기간 동안 그리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파산 또는 부채.

나의 권리사항

- 주택 공급 제공사는 신용 확인을 요구하는 대신 신청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또는 COVID-19 팬데믹(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 귀하가 임대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했다는 증거를 승인해야합니다.
- 주택 공급 제공사는 주요 임대차 위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의 허락 없이 현재 또는 이전 임대주에게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이전 임대주가 주요 임대차 위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신청자에게는 완화 요소(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 주택 공급 제공사는 귀하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o 주택 공급 제공사는 지난 30일 이내에 실행된 신용 또는 신원 조회 수수료를 제공한 신청자에게 신용 또는 신원 조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 주택 공급 제공사는 신용 조회와 신원 조회를 모두 실행하기 위해 \$20 또는 실제 비용(둘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용 보고서에 근거하여 신청을 거부 전신용 보고서의 오류 및 단기 실업/질병과 같은 부정적 신용 사항을 설명하는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14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만약 귀하가 거부당했다면, 귀하에게 거부 사유가 제공되어야 하고 귀하의 신용 보고서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정부자금 지원 주택에 신청할 경우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hcr.ny.gov/marketing-plans-policies#credit-and-justice-involvement--assessment-policies